

[2012.8.18] [992 , 2012.8.16,] () 02 - 2023 - 4335

1 () 「 」

[: 2012.8.18] 1

2 () 「 」 (“ ”) 2 1 “ (“ ”)

1. (賃借) 가 3 . ,
가

2.

3. 가

4. 가 (“ ”)

[: 2012.8.18] 2

3 () 2 1 “ ”

1.

2. 가

가

3.

[: 2012.8.18] 3

4 () 「 」 (“ ”) 2 1 1
2 가 3

1.

2.

2 1 2 2 가 3 .

가 3 .

[: 2012.8.18] 4

5 () (5 1 8 1 .
(“ ”) 1 .
(「 」 . . . ()

1)

2
[: 2012.8.18] 5

6 () 5 2 8 4
4
()

[: 2012.8.18] 6

7 () 5 3 8 5
5

[: 2012.8.18] 7

8 () 8 6 「 」
2 3

1
가

[: 2012.8.18] 8

9 () 6 1 29 3 , ()
“ ”)
(가)가
가

[: 2012.8.18] 9

10 () 7 1 6 “ ”
6

[: 2012.8.18] 10

11 () 13 1 , 29 3 20
1 7

“ ”)
1 20 2 8

9
13 1 6 “ ”
13 1 29 3 29 2
12

(,)

1 . 「 」 36 1
2 3

(3)

1. ()

2. ()

3.

[: 2012.8.18] 11

12 () 13 2 , 29 3 20 3
10

()

[: 2012.8.18] 12

13 () 13 3 , 29 3 20 4

11

[: 2012.8.18] 13

14 () 13 2 · 3 () 29 3 20
5 8

“ ” “ ”

[: 2012.8.18] 14

15 () 15 1
가

1 . 「 」 2 3

2 2

[: 2012.8.18] 15

16 () 15 3
()

[: 2012.8.18] 16

17 () 15 4
가

가

[: 2012.8.18] 17

18 () 15 5 5 “ ” .
1. 가
2. ()

[: 2012.8.18] 18

19 () 21 2 29
3

[: 2012.8.18] 19

20 () 27 29 3
(「 」 2 1 가)

[: 2012.8.18] 20

21 () 1 2 “ ”
12

[: 2012.8.18] 21

22 () 32 3 “ ”
3

[: 2012.8.18] 22

23 () 37 1 (“ 가
”) 가

[: 2012.8.18] 23

24 () 42 2 ,

[: 2012.8.18] 24

25 () 54 1 62 13

[: 2012.8.18] 25

1 () 2012 8 18 .

2 ()

18 4 5 “ ” “ .
” .

10 5 1 “ ” “ . ” .

가가 .

11 3 1 1 2 .

1.

2. .

64 3 “ ” “ ” , “ ” “
” .

3 () 「 」
가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건강식품 []화장품/미용용품 []교육/도서 []생활용품/서류, []회원권/상품권, []가전, []컴퓨터/사무용품, []통신기기, []자동차/자동차용품, []의류/패션,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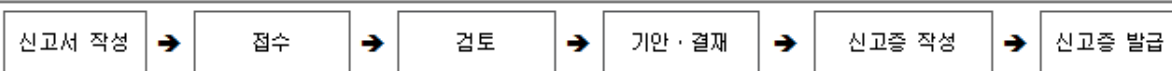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 297mm[백상지 80g/㎡]

제 호

방문판매업 신고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남·여)
5. 전자우편주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 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남·여)
5. 전자우편주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방문판매업 휴업 신고서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영업재개 영업재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 항목	기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 297mm(백상지 80g/㎡)

청약 철회·계약 해제 통보서

수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성명	회사대표 귀하		
주소			
연락처			
발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관련 사항			
상품·서비스명			
계약 연월일		계약서를 받은 날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은 날		상품 수량	
계약금액		이미 지급한 금액	
계약 경위 및 상황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사유			
제품의 현재 상태			
기 타			
<p>「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함을 알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성 명</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서명 또는 인)</p>			

210mm× 297mm[백상지 80g/㎡]

**[] 다단계판매업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의 규모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서예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율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율 확인서(후원방문판매업만 해당합니다)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4.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5.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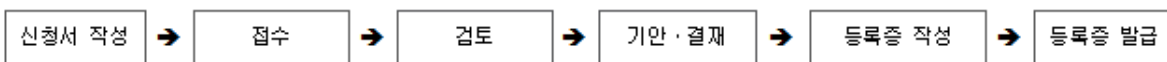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10mm × 297mm [백상지 80g/㎡]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1. 등록번호
2. 상호
3.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5. 대표자의 생년월일(남·여)
6. 전자우편주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뒤 쪽)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 등

연월일	변경 및 처분 내용	담당자(서명 또는 인)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1. 등록번호
2. 상호
3.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5. 대표자의 생년월일(남·여)
6. 전자우편주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10mm × 297mm [백상지 120g/㎡]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 등

연월일	변경 및 처분 내용	담당자(서명 또는 인)

[] 다단계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
[] 후원방문판매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10mm× 297mm[백상지 80g/㎡]

다단계판매업 휴업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신고서
 영업재개 영업재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 항목	기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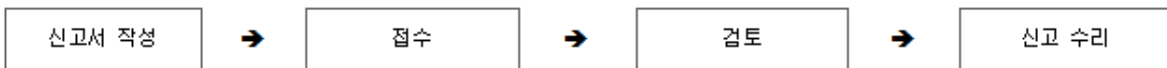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10mm× 297mm[백상지 80g/㎡]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앞 쪽)

기본 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록 직전 사업연도 1년 기준)		
①공급가격 합계액	₩ (금 원정) (1년간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		
②판매가격 합계액	₩ (금 원정) (1년간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 % (① 판매가격 합계액 ÷ ② 공급가격 합계액) × 100		
본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2호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월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

기 간	공급가격 합계액	판매가격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단체명	
	주된 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홈페이지 주소	
	설립 연월일	
	회원 현황	회원의 수(지부의 회원 수를 포함합니다)
	설립 목적	
	사업 내용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4조제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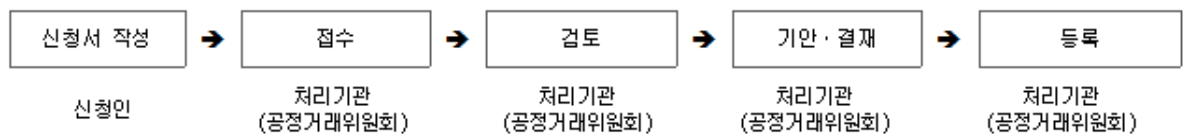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2. 인력·재정 상황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자료 3.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 297mm[백상지 80g/㎡]